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9. 27 선고 2024나53114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재판경과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9. 27 선고 2024나53114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12. 22 선고 2022가소21055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A

피고, 피항소인B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천

담당변호사 김순부

변론종결 2024. 9. 6.

판결 선고 2024. 9. 27.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12. 22. 선고 2022가소21055 판결

주문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410,17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6.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7. 10. 23. 원고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가단248708호로 피고의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음을 이유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구하는 소송(이하 "관련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

나. 이후 피고는 2017. 11. 22. 원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2017. 12. 12.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조합원으로 가입시키는 결의를 하였으며, 2018. 1. 11. 원고에 대한 관련소송을 취하하였다.

1. 피고가 조합원총회 의결을 거쳐 원고가 조합원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보류지 아파트를 원고에게 분양하는 것으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한다.

2. 피고는 원고가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보류지 아파트를 분양받는 절차를 모두 이행한 후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매도청구소송을 취하한다.

3. 원고는 피고가 위 매도청구소송을 위하여 지출한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고, 향후 피고가 추진하는 정비사업에 대하여 일체의 이익을 제기하지 아니하며,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향유하고 의무를 부담한다.

다. 이후 원고는 2019. 9. 24.경 서울강서경찰서에 피고의 당시 조합장 등에 대하여 이 사건 합의서를 위조·행사하였다면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고소하였으나,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는 2019. 12. 26.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20. 6. 28. 피고에게 이 사건 합의서 기재 내용과 같이 관련소송의 소송비용 6,410,17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합의서는 피고 일방적으로 기재한 내용으로 원고가 확인하지도 못한 상황에서 피고가 원고의 도장을 받아 날인한 것으로 위조되었거나, 원고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이 사건 합의서 내용과 같은 합의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합의는 무효이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기수령한 6,410,17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급부를 한 다음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이른바 급부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 이 경우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자는 급부행위의 원인이 된 사실의 존재와 함께 그 사유가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소멸되어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되었음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이는 타인의 재산권 등을 침해하여 이익을 얻었음을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이른바 침해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상대방이 이익을 보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는 점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 것과 구별된다(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다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의 조합장 등에 대하여 이 사건 합의서의 위조 및 행사를 이유로 고소하였으나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진 점, 피고가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원고에게 보류지 아파트를 분양해 주고 관련소송을 취하하는 대신 원고가 관련소송의 소송비용을 부담하기로 함에 따라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게 된 것으로 원·피고 사이에 이 사건 합의에 이르게 된 경위에 충분히 납득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합의서가 피고에 의하여 위조되었다거나 원고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이 사건 합의에 이르게 된

것으로 무효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합의에 따른 이행이 이루어진 후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비용부담 및 확정 신청사건(이 법원 2021카합66호)에서 "관련소송의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고,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사건에 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없음을 확정한다."는 내용의 결정이 내려졌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합의가 무효로 되는 것도 아니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이종채

판사허일승

판사송승훈